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저 **안 설 명**

□ 의안번호 제1321호

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

- ○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적극 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.
- 참고로 대통령령에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, 일부 사항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부서의 지정,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며(안 제4조)
-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, 우수공무원 선발,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(안 제5조)
-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. (안 제6조~제15조)
- □ 아무쪼록 적극행정이 서울시의 새로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, 조례 제정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